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 공개의 한계와 법적 쟁점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1. 문제제기

지난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수 B씨와 O엔터테인먼트사가 상호 제기한 계약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연예인에게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원고의 사생활을 일정부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원고인 B씨에게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일정부분 이를 긍정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대중스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생활의 중요성을 법원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최근 논란이 되는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중스타에 관한 사적 정보는 대개 보도나 오락 프로그램과 토크쇼,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보도에 의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실제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는 경쟁적으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이들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를 동의 없이 게시판에 퍼나르게 되고, 이를 대중매체가 중계하는 방식으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모 여배우와 관련된 결혼설이나 임신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거나, 모 여가수와 모 남자 인기가수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유

대중스타들이 공인이라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보호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포되었다. 그 외에도 대중스타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해킹을 통한 사적 정보 들추기(심지어는 공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등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이것이 마치 큰 문제라는 식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산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예는 아이돌 그룹 2PM의 전 멤버인 박재범 사건이다. 연습생 시절에 그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올린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판여론에 밀려 가수 활동을 중단하였다. 박재범이 연습생 당시 올린 글을 언론이 공개하면서 연예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아예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거론되었다. 물론 박재범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박한 애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옹호론도 있었으나, 언론의 보도 당시의 분위기는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도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유명해진 가수 그룹의 멤버로서 언론은 그 활동이나 언행이 공개되어도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한 셈이고,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박재범은 그룹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밀비재하다. 물론 네티즌이나 언론이 모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취재과정을 거치며, 그 보도가 진실인 부분도 있다. 또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보도가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보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중스타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퍼나르거나 사적 정보를 게재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이 또한 스타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의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대중스타들이 공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보호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¹⁾

1)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스타들은 오랫동안 언론의 더욱 악의적인 보도를 두려워하여 소송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소송에 승리하여 언론을 처벌하더라도 해당 연예인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급되어 연예인들에게는 소송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때문에 법적 대응보다는 합의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한겨레, 2003. 3. 24.자 p.28.).

미국의 경우에도 대중스타는 일반인보다 사생활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 판결의 경향이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아마도 이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스타가 공적 인물이므로 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 또한 대중스타가 정말로 공적 인물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사적인 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급심 판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중스타의 사적정보의 공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들의 공인성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의 공개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를 기존의 연구들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²⁾

2. 기존문헌 및 논의 분석

1) 대중스타의 의미

비록 대중스타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같이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³⁾ 현대 사회에서의 이들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제도적 권력의 기반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생활양식이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권영성, 2004).

또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중요한 결정권자(decision-maker)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표상에 대한 주요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Dyer, 1995; Brown, 1980).

특히 알 권리의 대상이 특정의 정치인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범주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중스타에 관한 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박용상, 2008).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비록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중스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정되는 대중스타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대중스타란 유명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대중스타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대중스타의 유명세다. 이러한 유명세는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수록 유명세를 더욱 크게 누리게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

2)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 명예훼손과 직결되므로 차이 없이 판단되어 온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점차 독립적으로 분화되고 있다(이재진, 2006).

3) 스타는 “권력이 없는 엘리트”라고 정의되기도 한다(Dyer, 1995, p.165).

4) 언론중재법 제5조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적 대중스타는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비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며 정치적인 공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여 유명세를 누릴수록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대중스타의 경우에는 유명세의 대가로 일정부분의 사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Burr, 2004).

또한 대중스타는 연예인과 유사하게, 그 재능과 명성, 그리고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알려지게 되고, 그 행위나 인격에 대해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권영성, 2004). 대중스타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와의 관계이다. 대중스타는 일반인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높고,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접근하고자 하며, 때로 선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보도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되며 나아가 언론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다(이재진, 2004).

구체적으로 대중스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르게 인식된다(윤성옥, 2007; Nordhaus, 1999; Ware, 1997). 첫째, 대중스타는 자신을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어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자신이 알려지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받는 척도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둘째, 대중스타의 사생활은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공적인 정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수용자들은 대중스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심영역에 존재한다고 인식된다. 언론은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중스타는 이미 자신이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스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에 사생활 보호 관련법은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 대중스타의 법적 지위

유명세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중스타는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누리게 되는가? 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대중스타의 범주에 속하는가? 이는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확한 공인인 정치인을 제외하면 유명인에 대해서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스타의 범주에 누가 속하는가 하는 점은 기존 이론적 논의나 관련 판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유명세를 누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의 대중스타와 광의의 대중스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대중스타 범주에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가수, 배우, 탤런트, 개그맨, 모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광의의 대중스타는 협의의 스타와 아울러 운동선수, 유명 앵커, 인기 정치인, 인기 강사나 교수를 포함한다(이재진, 2006).

그러나 대중스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에 준용되는 법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학계의 경우 유명세를 타는 대중스타는 대개 공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승선, 2004; 김옥조, 2007). 특히 이승선(2004)은 공인을 자발적-정치적 공인, 자발적-비정치적 공인, 비자발적-정치적 공인, 비자발적-비정치

적 공인의 4개 부류로 구분하고, 대중스타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자발적-비정치적 존재로서의 공인이라고 보았다(<표>).

<표>에서 볼 수 있듯, 자발적이고 정치적 공인으로 된 부류는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판단하는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에 가까운 것인 반면, 비자발적-비정치적 공인은 제한적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Pember & Calvert, 2007/2008).⁵⁾ 이러한 구도에서 대중스타를 위치 지운다면 자발적-비정치적 공인과 비자발적-비정치적 공인 2개의 범주 모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 대중스타는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비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발적이며 정치적인 공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이재진(2004)은 현재 대단히 인기 있는 대중스타와 현직이 아닌 과거의 대중스타의 보호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

<표> 공인의 범주

		정책결정 · 자원 분배 영향력	
		정치적(정책 · 자원분배 영향)	비정치적
미디어접근자발성	자발적 허용	자발적 · 정치적 공적인물 (공직자, 정치인, 기관/단체)	자발적 · 비정치적 공적인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비자발적 감수	비자발적 · 정치적 공적인물 (대기업대표, 고위문화계인물)	비자발적 · 비정치적 공적인물 (범죄 연루자, 피해자)

* 출처 : 이승선(2004).

5)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공인은 선출직 공직자나 입후보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 고위공직자 등이다. 전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은 '유명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타, 대기업 총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어떤 지위와 관련된 보도로 인해 또는 특정한 공적 논쟁에 참여하거나 센세이셔널한 범죄로 인하여 인지도가 높아진 인물을 '제한적인 공적 인물 (limited public figure)'이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선수는 아니지만 경기의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선수나 흉악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여전히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관련 분쟁에도 적용된다(염규호, 2000; Pember & Calvert, 2007/2008).

법적으로 공인의 지위에 속할 수 있는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다. 누가 공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가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공인성’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공인에 가까운지 아닌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 그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공인의 범주화에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유명세를 누렸는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으로 공인의 지위에 속할 수 있는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누가 공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가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공인성’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공인에 가까운지 아닌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가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공인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공인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논란이 된 인물이 ‘상당한 정도 공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과 유사한 정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인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도 그 내용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공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를 포함한 사생활 침해에서 대개 면책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나 공적 인물들의 초상권은 대개 인정되지 않으며(Page v. Something Weird Video, 24 Media L. Rep.(BNA) 1489), 사인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도용이 아닌 공익적인 순수한 뉴스 기사의 경우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Baugh v. CBS, Inc., 828 F.Supp. 745 (N.D.Cal. 1993)).

3)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 유형과 해결 방식

비록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스타에 대한 소식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식도 국민의 알권리의 일부라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적 혼란 속에서 스타의 사생활 침해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스타의 권리침해 유형을 106건의 판결례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윤성옥(2007)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소송 건수의 47.2%(명예훼손 45.3% + 기타 1.9%)를 제외한 52.8%가 사생활이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는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으며, 사적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13건(13.38%), 범죄에 연루되어 보도된 경우는 4건

(4.1%)으로 나타났다. 사적 정보와 관련된 경우 그 내용은 연애설, 결혼·이혼, 성형수술 등 사적인 비밀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대중스타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개 1억 원 이상이었으며, 20억 이상 청구한 경우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스타의 경우에는 범죄연루 보도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 스타의 경우에는 음란이나 선정성에 관련된 것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전체 106건의 소송에서 매체가 피소인으로 나타난 경우는 34건이었고, 이중 인터넷이 피소된 경우는 4건(11.8%)으로, 인터넷이 스타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일간 스포츠지로 13건에 달했다(38.2%).

3. 관련 판례 분석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판례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중스타를 유명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에 국한하여 이들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대중스타의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성하는 요인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은 대개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사적인 사실(정보)을

공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1) 판례에서 나타난 대중스타

우리나라 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대중스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판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96나24196(1996. 9. 20. 선고), 2003나55334(2004. 10. 12. 선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527 판결, 2004가합82527(2005. 7. 6. 선고) 판결 등에 의하면 대중스타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 인기 연예인, 연예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 등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전술한 ‘유명세’가 있어야 하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어야 하며, 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때 영향력이란 공적인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대중스타라고 하더라도 연예계 현역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 한때 유명 여배우였던 원고의 동생과 관련하여 동생이 마치 원고의 숨겨진 딸인 것 같은 인상을 보도한 데 대해 원고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고 가정 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6) 판례의 전체적 경향은 대중스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관되게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07).

사생활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①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②반사회적 범죄 방지 ③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손실의 4가지 주제와 직접 관련된다.

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12월 19일 유명 가수 신해철과 윤 모 씨가 근거 없는 결혼설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면서, 비록 신해철의 경우 결혼 얘기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내용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언론사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해철과 결혼한 사람이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공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대중스타의 기준이 유명세를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자면 대중스타가 명확히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선상의 위치를 지움으로서 대중스타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보다는 현재, 인기를 누리고, 유명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매체에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공인에 가깝다고 하겠다. 공인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적어도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공인에 속하는 대중스타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생활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의 경우,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혼 여부와 사유, 출생의 비밀, 개인의 병력(병의 유무)과 같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거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함부로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면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즉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생활의 공개

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만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개의 허용 정도는 일반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없이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 보도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나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적인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공의 정당한 알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원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공인이라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법원은 “(연예인이 되기 전의)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촬영에 응한 원고가 추후 공개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며 법익을 포기하거나 침해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으로 항변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되었다. 이 관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진실한 사실, 즉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은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았으나 사실의 세부적 내용, 즉 그 비디오테이프를 어떤 사람과 찍었는가 등에 관한 것은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경환, 2006). 즉 유명연예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는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사안이 문제된 판결에서 법원은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비교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결국 사생활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공익성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①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 ② 반사회범죄방지, ③ 대중계몽,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의 4가지 주제와 직접 관련된다(이재진·이성훈, 2003). 이러한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보다 크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 또는 원고가 공인인가를 통해 판단하거나, 이를 동시에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공익성의 구성요건에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와 공적인 목적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중스타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의 많은 부분이 이들의 연애 관계, 성형수술, 부부불화, 이혼문제, 또는 심한 경우 자살의 원인 등에 관한 것들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당연히 사생활 침해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대중스타의 경우에는 사적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위

하급심 법원은 대중스타에게 있어 초상권이란 사생활 침해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는 들이 대고 있다.

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대중스타가 완전히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부분의 사생활 보호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사안을 보호해야 되는가(어떤 것은 왜 안 되는가?)하는 문제, 인터넷 게시판에 공인으로서의 대중스타들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중스타들이 비록 개인적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덜 보호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 법제도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중스타들의 유명세는 대중스타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보다는 이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미지가 함부로 훼손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초상권이란 개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의 영리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 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박용상, 2008). 이러한 초상권은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⁷⁾의 인격권 개념에 속하는데, 아직 우리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하급심 법원은 대중스타에게 있어 초상권이란 사생활 침해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원은 우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등의 규정에 의

7)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할 때 모든 국민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83698 판결).

법원은 또한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뒤통잡되어 그 존재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99가합 84901 판결). 같은 맥락에서 “유명 연예인”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9. 7. 30. 선고 99가합 13985 판결). 그러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 그 인물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되지 않았다면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라는 법익을 이익형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이러한 판결경향을 종합하자면 전반적으로 대중스타의 경우 이들이 공적 인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우상으로 떠오른 대중스타들이 공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개나 초상권의 침해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의 학술적인 논의나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판단은 결국 개별 사건들을 다루는 판사들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사들은 표현(또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이라는 이익을 적절히 형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판결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대중스타의 공인으로서의 지위나 이들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 대한 허용 여부 등은 현재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소위 공인이론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공인이나 아니냐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정도의 판단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가 된 표현과 관련된 대중스타가 상당한 정도 공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공인에게 적용되는 사생활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스타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이 다소 혼재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공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중스타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자리를 잡을 때 까지

8) 헌법재판소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서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인은, 우선은 해당 인물의 공인성 판단과 상관없이 공개의 목적이 공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는 ‘공인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공인인지 아닌지를 양극으로 하는 선상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여러 요인을 통해 판단하고 상당한 정도 공인에 기울어져 있다면 공인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서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인은, 우선은 해당 인물의 공인성 판단과 상관없이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도를 목적으로 한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인지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 사적인 목적으로 게재한 것인지 등을 통해서 목적성 여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점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판례나 학술적 연구들은 ① 정치적인가 아닌가 하는 요인과 ② 자발적인가 아닌가 하는 요인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관련 대중스타가 정치적인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과 공적 결정(public decision)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성이나 자발성의 요인이외에도 대중스타의 ③ 유명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얼마나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대중의 정당한 관심이 높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④ 현재 활동 중인가 하는 요인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유명한 사람이 과거의 유명인보다는 더욱 공인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인물의 공개된 정보가 ⑤ 범죄보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쟁점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에 따라서는 해당 인물이 ⑥ 미디어에 대해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인물이 공인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⁹⁾

9) 유사하게 박용상(2008)은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의 비교형량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법익의 종류와 부문에 관하여 세분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립하는 공익을 다양한 조합에 의해 비교형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고려 요인에는 보도가 공적인물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 공적 인물에는 그 지위 및 공공 참여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러한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그의 여러 생활영역 중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 공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열거된 요인들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결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고려 요인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판사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최대한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공인성 여부와 공개의 인격권 침해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2004)은 공인 판단과 사생활 침해에 있어 공적자와 같은 명확한 공인과 그렇지 않은 공인을 법적으로 달리 판단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당 스타가 얼마나 공인에 가까운가 하는 공인성 정도 판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당한 공인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며 어떤 방식으로 법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나, 공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공인성 정도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중스타가 비록 공인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생활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실제로 잘못된 사적 정보의 공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대중스타들의 활동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대중스타들의 경우,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인기를 얻고자 하며 때로는 이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도 공공연

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사생활 공개의 허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¹⁰⁾

기존의 논의와 법원의 판결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공인의 공적인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며, 공인의 사적 정보의 경우에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언론중재법과 판례에 근거하자면 일단 공인으로 인식되는 경우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기보다는 그 사실이 진실에 가까운 경우이며, 공개가 가능한 것은 실제 내용의 큰 주제나 사실자체(예를 들어 누가 결혼을 했다, 누가 이혼을 했다)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예를 들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왜 이혼을 했는가)에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자칫 표현(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부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의 사적 정보 보도에 있어서는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용상(1997)은 “내밀한 영역의 경우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며 공적인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에 관한 것인 경우 이는 최대한 허용한다. 그 사이에 속하는 사사(私事)적 영역에 있어서는 양자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간파하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현재의 우리 법리는 사적인 정보 중 내밀한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과 사인

10) 대중들은 언론을 통해 연예인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랑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들의 결혼 발표라든가 또는 결혼식 행사에 대한 보도가 대중스타들의 인기를 배가시키며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홍보효과를 낳게 된다.

의 법적용상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공인의 사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 사실을 동의 없이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법리해석은 좀 더 유연해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중스타로서 공인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긍정적인 내용인 경우라면 공적인 관심사에 속하는 사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 영역 또한 점차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관련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스타들은 점차 무거워 지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경환(2006).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98호(봄), pp. 62~78.
- 김옥조(2007). 『미디어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택수(2002).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언론중재』, 85호(겨울), pp. 4~15.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용상(1997). 『언론과 개인법익』. 서울: 현암사.
- 윤성옥(2007). 한국 스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 1990년~2007년까지 스타의 권리 분쟁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pp. 91~122.
- 염규호(2000).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언론중재』, 74호(봄), pp. 62~81.
- 이승선(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pp. 293~334.
- 이재진(2009).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pp. 7~50.
- 이재진 · 이성훈(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호, pp. 141~176.
- 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여름호, pp. 414~445.
- 한위수 (2004).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91호(봄), pp. 22~36.
- Bird, E. (1995). For enquiring minds: A cultural study of supermarket tabloids.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W. (1970). Imagemaker: Will Rogers and the American Dream.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Burr, S. L. (2004). Entertainment law. Thomson West.
- Dyer, R. (1982). Stars. 주은우 역 (1995). 『스타: 이미지와 기호』. 서울: 한나래.
- Nordhaus, J. E. (1999). Celebrity' rights to privacy: How far should the paparazzi be allowed to go? Review of Litigation, 18(2), 285~316.
- Ware, H. E. (1997). Celebrity privacy rights and free speech: Recalibrating tort remedies for "outed" celebrities.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32(2), 449~489.